이 보도자료는 **금일 11:30경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검찰 PROSECUTION SERVICE

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황우진
전화 031-5182-4290 / **팩스** 031-5182-4555

보 도 자 료
2024. 9. 24.(화)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사건 수사결과
- 대표이사, 본부장 구속 기소, 상무 등 관계자 6명, 4개 법인 불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2024. 6. 24. 화성시 소재 전지제조업체에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피해(사망 23명, 부상 9명)**를 유발한 화재사건에 대응하여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사건 초기부터 협력수사를 진행한 결과,

  - 오늘(9. 24.) **대표이사 A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본부장 B**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는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A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B 등이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비상구 설치 등)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전지 연쇄폭발에 따른 화재로 근로자 23명을 사망, 9명을 부상케 하고,

  - **(파견법위반)** A, B는 무허가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D로부터 전지 제조 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고, D는 위와 같이 근로자를 파견하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A, B, D 등이 공모하여 파견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 **(업무방해)** B는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위계로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고,
- **(건축법위반)** B 등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였다는 것입니다.

- 수사결과, 이 사건은 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 ②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③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 ④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 조작**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전지제조 작업장의 위험성도 모른 채 투입된 근로자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참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형참사 수사에서 **검찰은** 경찰·노동청의 이원적 수사를 조율하여 수사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안전과 배터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투입하여 실체 규명과 법리구성에 기여하였으며, **경찰과 노동청은** 신속한 초동수사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납품비리와 위험의 외주화 등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였습니다.
-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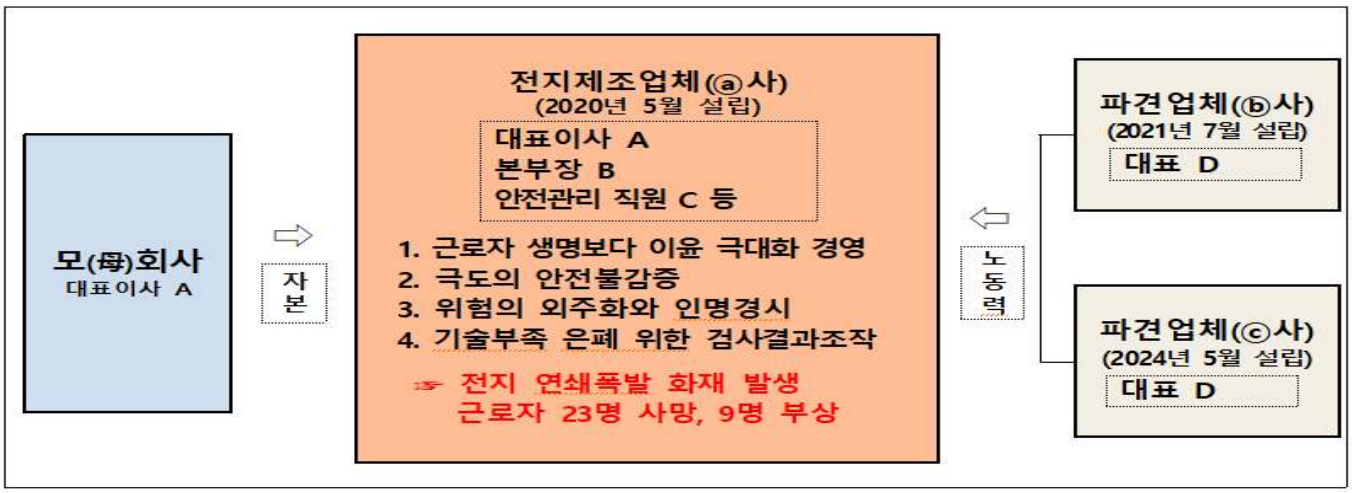

2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1	A(ⓐ사 대표이사) ⓐ사(전지제조업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24. 6. 24.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화재 발생, 피해자 23명 사망
2	B(ⓐ사 본부장) ⓐ사(전지제조업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4. 6. 24. 비상구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23명 사망
3	B(ⓐ사 본부장) E(ⓐ사 상무) C(ⓐ사 직원) F(ⓐ사 직원) G(ⓐ사 직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24. 6. 24. 전지 보관·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 등) 및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등)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23명 사망, 9명 부상
4	A(ⓐ사 대표이사) B(ⓐ사 본부장) D(ⓑ, ⓒ사 대표) ⓐ사(전지제조업체) ⓑ사(파견업체) ⓒ사(파견업체)	파견법위반	'21. 11.~'24. 6. 무허가 파견업체인 ⓑ, ⓒ사 소속 근로자 320명을 ⓐ사의 직접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각 파견
5	A(ⓐ사 대표이사) B(ⓐ사 본부장) D(ⓑ, ⓒ사 대표) E(ⓐ사 상무) ⓐ사(전지제조업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2. 2. ⓑ사 소속 파견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대신 합의금 지급(이른바 '공상처리')하고,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하여 산재발생 사실 은폐
6	B(ⓐ사 본부장)	업무방해	'21. 12.~'24. 4. 국방기술품질원의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수검용 전지 교체 등 위계로 품질보증검사 업무 방해
7	B(ⓐ사 본부장) H(ⓓ사 대표) ⓐ사(전지제조업체) ⓓ사(공사업체)	건축법위반	'21. 7. 화성시장 허가 없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

3 수사 경과

○ 2024. 6. 24. 화재사건 발생, 사고 당일 전담수사팀 구성

○ 2024. 6. 26. 경찰·노동청, ⓐ사 등 합동 압수수색

○ 2024. 7. 23. 검찰, ⓐ사 현장상황 점검

○ 2024. 8. 23. 검찰, A, B, C, D 사전구속영장 청구(경찰, 노동청 신청)

○ 2024. 8. 26. 법원, A, B 구속영장 발부

※ C, D 구속영장 기각(피의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증거 확보되어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망 염려 없음)

○ 2024. 9. 3. 사건 송치

○ 2024. 9. 11. 검찰, E 업무상과실치사상 추가 인지

○ 2024. 9. 24. A, B 구속 기소, 나머지 10명 불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1 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을 추구한 끝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

○ 사고발생 업체의 **자본**은 A가 운영하는 **모회사에 전적으로 종속**

- 지분의 96%를 모회사가, 4%를 피고인 A가 소유한 구조로, 2020. 5. 사업 시작부터 모회사 출자 등으로 **자금지원**을 받고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무리한 생산 감행**

※ 2023. 매출액 47억원 상당, 당기순손실 : 73억원 상당

-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

-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C를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고, 인수인계 없이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방치

○ 비용절감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공정에 투입

- **불법 파견업체** 운영자 D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제공**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즉시 투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근로자 **생명·안전**보다 **이윤 극대화 경영 계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간 많은 기업들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예산을 확충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

- 이 사건 경영책임자 A는 안전을 도외시한 경영으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에만 치중

2 극도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예고된 인재(人災)

○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불구하고 예고된 위험 방치**

- 사고 이틀 전(6. 22.) 같은 공장의 제조 공정에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로에 무질서하게 적재된 전지·물건의 위험성에 관하여 관계기관이나 내부자들의 지적이 반복되는 등 **다수의 사고 징후와 위험 요인**에도 안전 미조치

가벽 뒤 출입구 앞 적재된 물건들

배터리 등이 무질서하게 적재된 복도

○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지 않은 채 생산에만 몰두**

- 현장에는 발화 원인 전지 외에도 다수의 발열 전지가 적재되어 일부 전지 폭발이 다른 전지로 **순식간에 옮겨붙는 연쇄폭발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

-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여 연쇄폭발 및 대규모 인명피해 야기

-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형식적으로 선임되어 근로자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등 **법률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조차 불이행**

○ 허가 없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는 등 **건축법위반**

-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하여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파견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

-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상통로 출입구의 위치조차 모른 채 작업 중 참변

※ 건축주인 ⓐ사, B 및 시공업체인 ⓓ사, H를 건축법위반죄로 기소

3 비숙련노동자를 대거 투입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 경시

○ 무허가 파견업체 인력을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한 **전형적 파견법위반 사건**

- 파견법은 파견 대상 업종과 기간을 제한하고 엄격한 허가제로 규제하는바, 파견법 규제를 회피하고자 **'위장도급(형식은 도급, 실질은 파견)' 방식**으로 운용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성 증대**

- 인력을 제공하는 무허가 파견사업주(ⓑ, ⓒ사)나 위험 작업을 직접 지시하는 사용사업주(ⓐ사) 모두 **파견근로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

※ ⓐ사는 무허가 업체인 ⓑ사(227명), ⓒ사(93명)와 도급계약 형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견 받아 전지생산·포장·검사 등 업무에 투입

○ 기술력 부족을 값싼 인력으로 메우려는 경영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

-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파견근로자들을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비상대피 등 **안전교육 없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

※ 본건 재해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

○ 작업의 위험성을 모른 채 코리안 드림을 꿈꾼 **이주노동자들의 무고한 참변**

- 사망자 모두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였고, **사고 3일 후에야 신원 확인**

- 이주노동자들은 **부부, 자매, 이종사촌 등 동시참변**으로 가정 자체가 붕괴

※ 사망자 대부분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1개월 내 5명, 2개월 내 9명)

○ 불법 파견 적발을 우려하여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은폐**

- 소속 근로자와 달리 파견업체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공상 처리로 은폐하는 등 **차별적 처우**

※ ⓐ사 소속 근로자의 경우 산재 신고 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였으나, ⓑ사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불법 파견 적발을 우려하여 합의금을 주고 은폐

4 기술 부족을 감추기 위한 검사결과 조작, 시료 바꿔치기

○ **기술력 부족**으로 불량전지를 제조하고 **위계로 품질검사 업무방해**

-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전지 성능이 미달하자 시료 전지 바꿔치기, 데이터조작 등 위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

※ B 등은 최초 납품 시점부터 수검용 전지를 별도 생산하는 등 조직적 위계로 품질검사 통과,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 경찰 수사중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이 품질검사를 위해 무작위 선별하여 검사 진행 중인 시료와 ⓐ사에서 성능시험 통과 위해 특별 제조한 시료를 ⓐ사 직원이 바꿔치기 하는 장면

○ 발각 후에도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생산을 강행**하고, **담당자 회유 시도**

- 국방기술품질원에 조작행위가 발각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B 등은 불량원인 파악이나 품질 개선 노력 없이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인력을 늘려 생산을 강행하고, 생산을 반대한 담당 연구원 회유 시도

5 수사의 의의

1 대형참사 사건 수사와 검찰의 역할

○ **이 사건 중대재해의 특성과 수사의 어려움**

- 전지의 연쇄폭발로 인한 대형화재 사건으로 폭발 전지들이 전소(全燒)되고 잔해물도 거의 없어 화재원인 규명에 한계

- 발화원이 된 리튬전지의 구조적, 화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화재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에 과학적, 기술적 분석 필요

- 동일한 사고임에도 죄명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은 노동청,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경찰로 수사권이 분리되어 수사의 중복과 상호모순 가능성,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동시 진행을 위한 조율 필요

○ **사고발생 당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노동청과 **협력 수사 진행**

- 사고발생 당일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검사 7명, 수사관 12명)을 구성하여, 사망자 전원을 직접 검시하고 부검영장 청구

- 경찰과 노동청에서 연명으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속히 검토·보완 후 청구하여 두 기관의 합동 압수수색 적극 지원

- 혐의 입증 가능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지폭발의 직접 원인보다는 화재 확산, 대피 실패 등 다수 인명피해를 유발한 의무위반사항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사안임을 경찰·노동청에 설명하여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도모

○ 경찰·노동청의 **수사일정 조율, 중복수사 방지 등 위한 조정과 협의**

- 수사 초기부터 경찰·노동청과 **수사기관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강제수사·송치 시점 등을 통일하기 위한 수사일정·계획 조율

-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적용 관련 경찰·노동청의 중복수사 내지 법리적 모순을 방지하고자 수사권의 범위, 관련 법리 등 공유

2 신속한 초동수사로 증거 확보, 사건의 구조적 원인 규명

○ 경찰과 노동청은 **신속한 초동수사로 다수의 증거 확보**

- 수사초기 경찰(123명), 노동청(27명)은 대규모 수사 인력 투입하고, 사고발생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최대한 증거 확보

○ 경찰과 노동청은 2개월간 충실한 수사로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 규명**

- **경찰**은 화재 원인 및 업무상과실 규명을 위한 수사 이외에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군납전지 납품비리' 혐의를 추가 적발**

- **노동청**은 산업재해에 관한 수사 이외에도 미숙련 이주노동자 인력을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시킨 **'불법파견 비리' 혐의를 밝혀냄**

3 대형참사의 실체를 밝히는 검찰의 전문성 발휘

○ 배터리 분야 전문검사 투입

- 배터리 분야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화학공학 박사 학위 보유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증 대상과 범위 특정**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지의 폭발 위험성, 화재 확산 가능성, 인과관계 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소명**

○ 산업안전 분야 전문검사 투입

- 대형참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산업안전 인증검사'가 다수의 유사사례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 제시**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리를 토대로 즉각 반박하고, 혐의를 소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최초 구속영장 발부**

6 향후 계획

○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하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유지

-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불이행한 경영책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회사 관계자, 파견근로자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몬 관련 사업주들을 엄정하게 단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 검찰·경찰·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음